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보고

1. \*\*\*\*\* 소송과 관련입니다.

2.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 송달(2015. 10. 16) 후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이 없어 2015. 10. 29부로 확정되어 종결하고자 합니다.

###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번 호 : \*\*\*\*\*

2) 원고(피항소인) : \*\*\*\*\*

3) 피고(항 소 인) : \*\*\*

### 나. 사건개요

1) 우리구와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0년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들에 대하여 각각 시공 후 정산과정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함

2) 이후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 조성 실태 점검 결과 보도블럭(화강)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환경보전비, 계약된 제비율 임의 변경, 아스팔트 깨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초과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어 우리구에서 원고들에게 2011년 11월 16일 기타잡수입부과고지서에 의해 초과지급금 환급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우리구를 피고로 하여 위 초과지급금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한 사항임

### 다. 소송결과

1) 조종결정일 : 2015.10.06.(조정결정)

2) 결정 주문 :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고지

가) 피고(항소인)의 원고(피항소인)들에 대한 2011.11.16.자 각 기타잡수입 부과고지에 의한 원고(피항소인)들의 채무는 다음 나)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피항소인)들은 피고(항소인)에게 2015.11.20.까지 각 250만 원씩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다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